

● 제268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  
제2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2016. 6. 21.

운 영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 김용석(서초) 의원 대표발의 】

의안번호 1188

#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김용석(서초) 의원 외 10명
- 나. 제안일 : 2016. 5. 19.
- 다. 회부일 : 2016. 5. 25.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현 조례상으로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 정당 소속 의원들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가 제약되어 있는 바, 국회 및 다른 시도의회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소수정당 소속 의원에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회 내 원활한 정당정치의 회복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의 비율에 의하도록 함 (안 제41조제3항 단서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).

다.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.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###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서울시의회”)에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(이하 “비교섭단체”)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“예결위원회”)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예결위원회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, 의회 내 정당정치를 회복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제안되었음.

### 2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예결위원회 위원 선임(안 제41조제3항 단서)

- 현재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절차와 같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있으며,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선임하고 있음(제41조제3항).
- 특히 예결위원회 위원 선임은 일반적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는 별도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을 함께 고려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(제41조제3항 단서).
- 이처럼 예결위원회 위원 선임 비율에는 ‘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’이 명시되지 않아, 조문을 해석하기에 따라 예결위원회 위원 선임 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제외할 우려가 있어 왔음.
- 이러한 측면에서 본 개정안은 현행 제41조제3항 단서에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조문 해석에서 보다 명확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<표 1>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1조(위원의 선임 및 개선)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<b>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</b>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.</p> <p>② <b>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</b>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.</p> <p>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은 <b>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</b>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.</p>	<p>제41조(위원의 선임 및 개선)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<b>의장과 협의한 후</b>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.</p> <p>② <b>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(이하 “비교섭단체”라 한다)</b>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.</p> <p>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은 <b>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 및</b>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.</p>

- 또한 예결위원회 위원 선임 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위원 피선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의회 내 정당 정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### 3 종합 의견

- 이상을 종합하면 본 개정안은 예결위원회 위원 선임 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도 함께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, 의회 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예결위원회 위원 피선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조례 해석에서의 명확성을 기하고 의회 정치를 구현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임.

<b>별첨</b>	<b>예결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 국회 및 광역 의회 규정</b>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지역	내용	관련조항
국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섭단체(20인 이상)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 비율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함</li> <li>-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행함</li> </ul>	「국회법」 제45조제2항·제6항, 제48조제2항·제4항
서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섭단체(10인 이상)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 비율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</li> </ul>	「기본 조례」 제41조제3항 단서
부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섭단체(5인 이상)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</li> <li>-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위원 추천은 의장이 행함</li> </ul>	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제1항·제2항·제4항
대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장이 추천, 본회의 의결로 선임</li> </ul>	「위원회 조례」 제9조
인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장이 추천, 본회의 의결로 선임</li> </ul>	「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1조제1항
광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섭단체(4인 이상) 소속 의원 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 비율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</li> <li>-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의 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선임</li> </ul>	「기본 조례」 제34조제3항
대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장이 추천, 본회의 의결로 선임</li> </ul>	「위원회 조례」 제9조
울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·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</li> </ul>	「위원회 조례」 제9조

지역	내용	관련조항
경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섭단체(15인 이상)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각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</li> <li>-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위원 선임은 소속 의원단체* 대표자와 협의</li> <li>- 무소속일 경우 의장이 행함</li> </ul> <p>*위원 추천일 현재 의회사무처에 등록된 교섭단체 외에 정당별 의원협의회 등 순수 의정활동단체로 제한</p>	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」 제15조
강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추천 정당(무소속 포함)별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</li> </ul>	「위원회 조례」 제9조제1항·제3항
충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섭단체(5인 이상) 소속 의원 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수 비율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</li> <li>-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행함</li> </ul>	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제4항
충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장이 추천, 본회의 의결로 선임</li> </ul>	「기본 조례」 제35조
전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섭단체(6인 이상) 소속 의원 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선임</li> <li>-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행함</li> </ul>	「기본 조례」 제35조제4항
전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각 상임위원장이(운영위원장 제외) 소속 상임위원 중 2명 추천, 교섭단체(6인 이상) 대표의원이 1명 추천, 의장이 나머지 의원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</li> </ul>	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2제4항
경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장이 추천, 본회의 의결로 선임</li> </ul>	「위원회 조례」 제9조
경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장이 추천, 본회의 의결로 선임</li> </ul>	「위원회 조례」 제9조
제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장이 추천, 본회의 의결로 선임</li> </ul>	「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
세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장이 각 교섭단체(3인 이상) 대표와 협의 후 추천, 본회의 의결로 선임</li> </ul>	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